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73호
2. 발 의 자 : 조상호 의원
3. 발의일자 : 2019. 1. 31.
4. 회부일자 : 2019. 2. 7.

II .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20조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활용된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의 공개 외에 운영위원회 심의 시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안건 참고)
3. 기 타
 - 입법예고(2019. 2. 12.~2. 19.) 결과: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조상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73호로 발의되어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활용된 계획서, 설명서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 체계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¹⁾ 따른 법정필수기구로서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은²⁾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정하도록 하면서도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서는³⁾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도⁴⁾ 상위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령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포함되어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안건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계획서, 설명서, 지출증빙서류 등’ 제반 참고자료의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한편 교육부의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의 예시로서 제안이유, 근거, 주요내용과 함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영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3제2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조의3이 열거한 사항 이외에 발언 위원이나 기타 위원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필요한 자료 등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사항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법정필수기구라는 점에서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어야만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비롯한 제반사항은 심의의 투명성과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폭넓게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현행 법령이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각급 학교별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2항이 회의 소집 시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안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에서도 안건에는 제안이유, 근거, 주요내용,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건 외 심의에 활용되는 자료의 존

재 가능성 매우 낮으며, 이미 공개된 안건(심의자료 포함)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공개함에 따른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이 명시하고 있는 ‘심의 시에 활용된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해석이 없어 조문의 명료성이 낮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3, 2019.2.15.).

-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학부모 등의 알권리가 행정편의에 우선한다는 점, 상위법령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상 명료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